제1747호

2020. 3. 12.(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4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0-4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 제2020-4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고 시

· 제2020-57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1

공 고

· 제2020-44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13
· 제2020-456호 양평제12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차) …… 1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54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21-2020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4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조직구성(안 제3조)
   다. 구협의회 운영, 임기 및 위ㆍ해촉(안 제4조~제6조)
   라. 주요역할 및 활동내용(안 제7조~제9조)
   마. 표창 및 활동지원(안 제10조~제11조)
   바. 시행규칙(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전화 02)2670-7543, 팩스 02)2670-3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본관 5층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2.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3.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조직구성) ① 평가단은 동별 1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하며,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 동별 단장으로 구성하는 구정평가단 구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동별로 단장과 총무는 각각 1명씩 두되, 동별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구협의회 운영) ① 구협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구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회장은 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해촉) 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으로 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고 있는 사람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구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를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평가단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평가)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구정 전반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2.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사업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평가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동 회의는 각 동별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 및 회의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4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일주차권 삭제 및 시간주차요금 상한액 신설

○ 안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일주차권 요금이 저렴한데 반해 신청가능면수가 적어 민원이 빈발했던 노상주차장 일주차권을 폐지하고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시간제 주차요금 일일상한 규정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1일 주차권 항목 삭제하고, 주차요금표 아래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나. 잠시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

○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

착오 또는 긴급한 사유로 잠시 입차한 경우(5분 이내) 요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 별표 1 비고 제5호에 “공영주차장에 최초로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이내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조항 신설

다.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요금할인 조항 신설

○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 라목, 마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요금할인 규정 신설 요청 및 이용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요금할인 규정 신설 필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할인규정 신설

라. 저공해자동차 조항 일부 개정

○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7호 일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조건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요구하였으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상 확인이 가능하며, 『주차장법』에도 감면조건으로 표지발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불필요한 감면조건 삭제 필요

⇒ 별표 1 비고 제7호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저공해자동차의 감면조건인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를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로 개정(안 별표1의 제7호 일부)

마. 병역명문가 요금할인 조항 신설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19호

2018. 11. 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는 규정 신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요금할인 조항 삭제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25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요금할인 규정이 부칙 <2019. 6.28.> 제2조의 유효기간이 2019.12.31. 종료됨

사. 공무수행 차량 등에 대한 요금면제 규정 신설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28호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 주최·주관 행사 운영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 단, 남용을 막기위해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경우만 인정

아. 승용차요일제 유효기간 신설

○ 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승용차요일제가 2020.7.8. 종료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대체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할인을 규정한 별표1 제12호에 대해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20. 7. 8.”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주차문화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전화 02)2670-3899, FAX 02)2670-36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한다.
※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영주차장에 최초로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별표 1 비고 제7호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를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2호 중 "참여차량 으로서"를 "참여차량으로서"로 하고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할인하되,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별표 1 비고 제25호를 삭제하고,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 주최·주관 행사 운영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 4. (생 략)

(신 설)

6. (생 략)

가. ~ 다. (생 략)

(신 설)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한다.

※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공영주차장에 최초로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신 설)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 ―같은 법 ―――――――――― ―――――――――――――― ――――――――― 같은 법 ――― ―――――――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 ―――――――――――――――――― ―――――――――――――――――― ―――――――――――――――――― ――――――――――――――――――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 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 ―――――――――――――――― 참여차량으로서 ――――――― ―――――――――――――― ―――――――――――――― ―――――――――――――― ―――할인하되,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2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25. <삭 제>
26. ~ 27. (생 략)	26.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 주최·주관 행사 운영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57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0 (문래동6가) 외 6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고시일 : 2020.3.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0 (문래동6가)	2020-03-12	2010-05-27	선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3.12.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0 (문래동6가)	2020-03-06	2020-03-12	대장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3 (영등포동2가)	2020-03-09	2020-03-12	대장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여의도동)	2020-03-09	2020-03-12	대장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27-3 (양평동1가)	2020-03-09	2020-03-12	대장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27-4 (양평동1가)	2020-03-09	2020-03-12	대장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5-1 (영등포동7가)	2020-03-09	2020-03-12	대장말소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44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6-1-5호 (2020년)	㈜신우유비코스 김문재	SWV2S-SA70-LITT-HTM (70대형)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70대형【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2020. 03.05.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42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456호

양평제12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차)

영등포구고시 제2018-33호(2018.04.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양평제12 재개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양평제12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37,561.8㎡)
3. 사업시행자: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재섭)
4. 재결대상 물건: 붙임 관계서류 참조
5. 열람기간: 2020.03.12. ~ 2020.03.27. (15일간)
6. 열람내용: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7.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8. 기　　타
   가)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나)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7)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